



# 중소기업 CEO 경영정보



## CEO Management Information

- **뉴스포커스** : 중소기업 가장 중요한 정책 파트너  
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채권은행  
협약 개정 外
- **스페셜리포트** : 중소기업 발전전략 요지  
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外
- **CEO 광장** : 협동조합 인력양성사업 추진  
대·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력 합의서 채택 外
- **경제산책** : 산업클러스터(Industrial Cluster)  
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

**뉴스포커스**

**□ 중소기업 가장 중요한 정책 파트너(청와대)**

-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대표간담회에서 “중소기업은 2만불시대를 향한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”며 “앞으로 중소기업을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삼겠다”는 의지를 천명함
- “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토론이 경제적의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”이라며 “중소기업인들도 경제적 의제가 이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”고 당부

**□ 세무조사 대상 축소(국세청)**

- 이용섭 국세청장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강연회에서 “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간섭을 줄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지난해 보다 축소할 계획”이라고 밝힘
-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
- 정기법인세조사, 주식변동조사, 원천세조사, 부가가치세 조사 등을 통합 실시
- 세무조사를 세수확보 목적보다 성실신고를 위한 수단으로 집행

**□ 中企 자가 경영진단 프로그램 개발(기업銀)**

- 중소기업 스스로 경영의 효율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가 경영진단 프로그램을 개발, 희망업체들에게 무료로 제공
- 재무항목, 경영환경 및 경영여건 등을 입력하면 개선이 필요한 경영 분야와 함께 개선 권고안을 제시

**□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채권은행협약 개정 (6. 3)**

- 주요내용

- 채권은행 확대 :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, 수출보험공사 포함
- 협약 적용 대상기업 : 채권은행 총 채권액 50억 이상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(구조조정촉진법 대상기업은 제외)
- 관리대상기업의 선정
  - 당해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
  -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
  - 채권액의 1/40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(단독 또는 공동으로)이 주채권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
  - 기타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○ 채권행사의 유예**

- 자동유예 : 제1차 자율협의회 소집통보가 발송시부터 소집일까지 (최대 7영업일)
- 채권행사 유예기간 : 1차 자율협의회 소집일부터 1월 이내 (실사시 2월), 1월 연장가능 (최장 3월)

**○ 관리대상기업과 특별약정의 체결 및 이행 점검**

- 채권행사 유예기간내 경영정상화계획의 확정
- 약정체결후 분기별로 이행사항 점검
- 이행실적 평가결과 불량하거나 정상화가능성 낮은 경우 공동관리 중단

**○ 우선매수권 부여 : 출자주식에 대해 기존 대주주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가능**

**□ 추가경정예산 4조5,000억원 편성 (재정경제부 6. 18)**

-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내수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 4조5,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
- 추경예산의 주요 항목은 서민생활 안정지원 1조7,000억원,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1조3,000억원, 기타 에너지 절약 예산과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교부금 1조4,000억원 등
- 영세소상공인 범주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연장시에도 신용도 하락 등으로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 원금상환비율을 종전의 최대 20%에서 5%로 축소

## 스페셜리포트

### □ 중소기업 발전전략 요지(산자부)

- 5.21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대표간담회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새로운 발전전략을 발표함

#### 【중소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】

- 비전 : 중소기업발전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와 2만 불시대의 조기 실현
- 중소기업 유형별 발전전략
  - ① 혁신선도기업 :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 배양
  - ② 일반중소기업 : 구조고도화와 IT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
  - ③ 한계기업 :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
- 4대 분야별 발전전략
  - ① 기술과 인력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
    - 대규모 집중형(5년, 50억원) 기술개발, 원천기술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
    - 교수·연구원의 중소기업 파견근무 확대 및 지원강화
  - ② 창업 활성화 및 신기술 사업화 촉진
    - 신기술창업에 대해 외국인에 준하는 세제지원방안 검토
    - 고위험투자펀드 시범운영, 기술사업화펀드 조성
    - 신기술제품 구매제도를 지자체와 대기업으로 확대 시행
  - ③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대·중소기업간 협력 강화
    - 하도급 적용대상 확대,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관행 개선
    - 반도체, LCD 분야 수급기업 펀드 조성
  - ④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 추진
    - 융자 → 투자, 물적담보 → 기술평가, 신용으로 전환
    - 한계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
    -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

### □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(국세청 6. 11)

- 국세청(청장 이용섭)은 6월 10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, 개청이래 처음으로 종합적인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

#### 【주요내용】

-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산분석에 의해 조사대상자 선정
  - 불성실신고혐의자,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, 주식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 혐의자 등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최소 선정
- 정부의 경제안정 정책을 적극 뒷받침
  - 규모별·기업포비율을 감안, 조사대상 기업체 수를 합리적으로 배정
  -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경제 근간 산업중 경영 애로기업, 지방 이전기업 등은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
  - 2004년도 창업중소기업과 기존중소기업 중 고용증대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2년~5년간 계속 유예
- 부동산투기, 고질적·지능적 탈세 및 세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자료상등에 대해서는 수시 선정, 적기조사
- 통합조사 등을 통해 빈번한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 부담 완화
  -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조사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제외
  -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의 세금탈루혐의시 원칙적으로 법인세·소득세 조사시 통합조사
- 충분한 준비조사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, 납세자의 편의 보장
-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  - 내국인과 차별 없는 세정상 대우
  - 이전가격조사는 법인세 조사에 통합, 조사대상 기간을 3년으로 단축

## CEO광장

### □ 협동조합 인력양성사업 추진

- 협동조합들이 청년층의 취업기피로 생산현장이 고령화됨에 따라 회원사의 인력부족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
  - 시계조합은 '00년 동서울대학교 협약을 체결, 시계전문 기능인력을 양성
  - 금형조합은 '03년에 인천기능대학, 인천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맺고 3~6개월의 기능교육과정을 운영하여 50여 명의 기능인력을 양성
  - 서울인쇄정보조합은 '02년부터 회원사들의 기능인력 채용시 한명당 매월 30만원씩 5개월동안 기능인력양성지원금을 지원

### □ 2003년 기업경영분석결과(한은)

- '03년중 제조업은 부채비율이 '6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수익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설비투자는 계속 부진
  - 매출액경상이익률은 수출호조 등으로 '7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
- 그러나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경영성과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,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
  - 대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5.4%에서 6.0%로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은 3.4%에서 2.5%로 낮아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
-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경상이익이 적자인 업체는 21.2%로 전년(18.8%)에 비해 2.4%p 상승하여 '98년(29.0%)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

### □ 대·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력 합의서 채택 (6. 17)

-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. 17일 전경련 회관에서 “대·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력 합의서”를 채택
  - 합의내용 : ▶대기업은 납품단가 및 결제조건 개선, 중소기업은 품질향상 노력 ▶부품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강화 ▶임금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▶업종별 협력분과위원회 구성 ▶기협중앙회와 전경련에 TF팀 구성
  - 후속사업 : ▶주40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인상효과 방지 ▶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지방순회 간담회 개최 ▶대기업은 중기 신제품 구매 지원

### □ 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” (삼성경제研)

- 미국 : ‘시장원리’와 ‘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’의 조화
  - 신용보증 중시의 금융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의 간접적 지원에 주력
- 일본 : 정부주도 육성정책으로부터의 탈각을 모색
  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경쟁의 전통을 유지·강화
- 독일 : 자생력 강화를 위한 수요자(중소기업)중심의 지원체제 구축
- 싱가포르 : ‘시장원리’와 ‘효율적 경제정책’의 장점을 조화
  - 다국적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추진
- 핀란드 :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대·중소기업 상생을 모색
  - 산업별 접근방식에서 클러스터별 접근방식으로의 정책전환

### 시사점

- 창업자원을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
  - 지역경제 및 클러스터와 긴밀히 연계된 정책을 실시
  - 혁신적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·시행
  - 글로벌 경쟁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정책 수립
- ※ 보고서 원본은 삼성경제연구소(www.seri.org)에서 다운로드 가능

## 경제산책

### □ 산업클러스터(Industrial Cluster)

-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특정지역에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모여있는 것을 의미
  - 연구개발(대학, 연구소), 생산(대·중소기업), 지원(벤처캐피탈, 컨설팅) 기능이 집적
- 또 기업들간 수평적·수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등 특정 산업분야가 집적되어 있는 일정한 지역을 지칭
  - 역내 기업 상호작용을 통한 사업전개, 기술개발, 부품조달, 인력, 정보교류 등에서 개별기업의 단순 합계를 넘는 시너지와 외부효과를 발휘
- 한국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, 임금상승, 기업해의 유출 등에 대응하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

### □ 조세부담률(ratio amount of taxes)과 국민부담률

- 조세부담률
  -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, ((국세+지방세)/경상GDP(국내총생산))
- 국민부담률
  - 국민부담액이 국내총생산(GDP)에서 차지하는 비중

국민부담액 : 국민들이 한해 동안 낸 세금 + 사회보장기여금(의료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보험료 등)

### □ 국민세부담 OECD 평균보다 15%이상 높아(조세연구원)

-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혜택이 1/3, 소득이 1/2수준인 반면, 세금 부담은 최고 15%이상 높은 수준
  - 사회보장지출을 제외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99.6으로 OECD 평균치인 100보다 낮았으나
  - 사회보장지출 비중을 감안한 조세부담률은 OECD평균에 비해 최고 15.3%, 국민부담률은 최고 17.3%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## 중앙회 조사관련 최근 주요활동

- 제조업공동화 실상 및 대응방안세미나 개최(5.20)
  - 담당부서 : 경제조사처 정책총괄부 ☎ 02)2124-3172
-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개최(5.20)
  - 담당부서 : 경제조사처 정책총괄부 ☎ 02)2124-3173
- 중소기업정책위원회 개최(6.1)
  - 담당부서 : 경제조사처 정책총괄부 ☎ 02)2124-3173
- 중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활동 및 대책에 관한 조사(316개)
  - 담당부서 : 산업조사처 조사통계부 ☎ 02)2124-3207
- 중소기업 금융기관 평가조사 (672개)
  - 담당부서 : 경영지원팀 ☎ 02)2124-3181
-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(6.14)
  - 담당부서 : 업무혁신팀 ☎ 02)2124- 3035